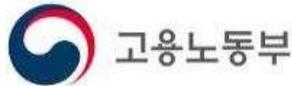
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8. 5. 31.(목) / 총3매(본문2, 참고1)	
국토 교통부	대중교통과	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문기성, 주무관 안승현 • ☎ (044)201-3823, 3827, 3832		
	노선버스 근로시간단축TF	• 팀장 강욱, 사무관 이경수 • ☎ (044)201-4978, 4979		
고용 노동부	근로기준 혁신추진팀	• 팀장 황효정, 사무관 곽철홍 • ☎ (044)202-7543, 7546		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1.(목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노·사·정, “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과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기로”

- 현 운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「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」 마련 예정

□ 정부(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고용노동부(장관 김영주))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(류근중 위원장),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(김기성 회장)는 ‘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’에 합의하고, 5.31일(목) 서명식을 개최하였다.

○ 금번 노사정 선언문은 금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·시행에 따라,

-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,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.

○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, 지난 5월 17일 정부합동 ‘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’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*을 진행해 왔다.

*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,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, 고용부·국토부(실장) 참여

- 그 결과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.

□ 이번 선언문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노사정은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.
-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, 정부는 이를 행정·재정적으로 지원한다.
-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'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'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하고,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.

□ 정부는 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, 컨설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-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, 군 운전경력자 활용 등 버스 운전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,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.

첨부.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국토교통부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문기성 사무관(044-201-3832), 이경수 사무관(044-201-4979), 고용노동부 곽철홍 사무관(044-202-754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	---

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

‘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’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및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정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,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.

1.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018년 7월 1일, 국민들의 이동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2.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기준 및 조건들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협력한다.
3.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
4. 정부는 노사 간 근로계약을 존중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행정·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.
5.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‘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’을 2018년 12월말까지 마련하고,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.

2018. 05. 31

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
위원장

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
회장

고 용 노 동 부
장 관

국 토 교 통 부
장 관